

제422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13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7)
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2)
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0)
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7)
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상정된 안건**

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 2
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7) ..... 10
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2) ..... 12
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 14
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0) ..... 16
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7) ..... 16
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 24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 25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 25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 25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 25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	25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	25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	25

---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오늘 법안 열네 건 올라왔는데요.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법은 지금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추경 이슈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중기재정계획까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바쁘기도 하고 그쪽에서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일은 일대로 하되 법안은 더 충실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특히 정희용 간사님께서 기재부에도 직접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좀 빨리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직접 이야기까지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법은 지금 저희 담당 국장하고 실장이 의원님들 뵙고 한 분 한 분씩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아직 전종덕 의원님만 일정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잡히는 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설명을 한 분씩 의원님들께 다 드리고 나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법은 지난번 소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우에 뭔가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특별하게 한우협회에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도 한우에 특별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오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같이 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10시13분)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법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심사자료 1번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이병진 의원안은 학교의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체적인 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현행법은 학교와 학교 외를 구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운데 도표보시면 대학을 새롭게 추가해서 학교, 대학, 사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학교와 사회를 구분하고 사회 내에 대학을 포함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행법과 같은 입법례가 환경교육법, 그다음에 정부 의견과 같은 데가 해양교육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영유아 대상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현재 456개소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확대될 경우 2만 8954개소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유보통합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자료에 어린이집을 학교교육에 포함하는 입법례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해양교육법 등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26조에 별도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논의필요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창의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정규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 하단 2번에 교육부의 수용곤란 의견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따른 재정 소요는 약 9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필요 의견입니다. 제1항과 관련해서 현재 29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대학 대상의 식생활 교육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항입니다.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추진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진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표현을 대학에서의 식생활에 대한 경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페이지에 대학교육 관련 입법례를 보면 대학교육을 학교교육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육을 사회교육에 포함하는 입법례가 각각 달리 있습니다.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쌀가공산업 육성법 제3조 국가의 책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네 번째로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사회식생활 교육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3호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관련 협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만일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일부 개정안 체계에 맞게 학교 및 대학 식생활 교육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4개 호를 포함해서 임의조항으로 저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검토의견 2번에 관련 협회 의견이 있습니다.

25페이지, 식생활 교육의 달을 1년 중 1개월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필요 의견입니다. 현재 9월 11일 주간에 식생활교육주간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1주간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운영하자는 수정의견이 제시됐고 26페이지에 보면 관련 가정폭력추방주간이나 동반성장주간 등의 입법례가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먼저 4페이지, 학교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법안의 취지는 지금 어린이집에도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방식을 정의조항에 학교의 정의에 넣어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지원조항에 넣어 가지고 하느냐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정의에 지금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네 가지가 돼 있는데 거기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학교 범위에 넣자 지금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아교육법하고 초·중등교육법은 학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는 학교라고 돼 있지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러나 보니까 이 법에서 학교라고 정의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추가로 넣게 되면 그 법하고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의 조항에 넣기보다는 26조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있는데 그 조항에다가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해 가지고 어린이집도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넣어 주면 어떨까, 저는 그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6조 개정하는 조문은 거기마다 2항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걸로 넣어 가지고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하는 걸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2번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저희들도 내용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수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마다 조금 더 지원을 하면서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것 이니까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교육부가 다른 부처에서 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게 법사위로 가게 되면 법사위에서 이것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이견이 정리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안 진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취지가 우수한 학교를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거기다 더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으로 26조에다가 이것도 충분히 넣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6조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그랬는데 저희가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가지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 조항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해서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26조 2항을 개정해서 넣어 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우수학교를 저희가 평가도 하고 더 우대해서 지원하고 넣을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3번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입니다.

이건 의원님께서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나눠서 조항을 만들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생활 교육을 저도 직접 담당해 보고 같이 일을 해봤고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만 식생활 교육의 가장 효과가, 성과가 좋은 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가장 좋고요. 중학교 가면서부터 조금씩 성과가 떨어지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포함시켜 가지고 규정을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대신에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조항 26조의2, 현재 개정안은 26조의4로 돼 있습니다만 26조의2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거기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대학 등을 포함한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대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지고 따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사회식생활 교육하고 포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사회식생활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개정안에 사회식생활 교육이 그렇게 죽 나와 있고 밑에 각호로 나눠져 있는 걸 굳이 그렇게 각호에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 없이 다 끓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은 앞의 본문에다가 넣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을 포함한 사회식생활 교육 활

성화를 위하여—각호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서—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밑에 각호를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문구도 조정이 되고 대학도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문구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식생활 교육의 달 지정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식생활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정도로 식생활 주간으로 바꿔 가지고 '식생활 교육주간' 이렇게 조 제목을 달고 의원님 취지를 살리되 주간으로 바꿔서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아니면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런 정도로 문구를 해 주시면 팬참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법이 들어가도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정기념일로 지정은 안 된다. 그 의미는 알고 계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법정기념일이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서 행안부 규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법정기념일은 안 된다. 그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차관님,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영양사들이 좀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저희가 빼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양사분들이 반대하시는 건 교육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양사분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법안에는 각호 1, 2, 3, 4를 따 가지고…… 그러니까 21페이지 얘기입니다. 21페이지의 26조의 4 해 가지고 1호, 2호, 3호에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 없이 각호는 삭제해 버리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영양사분들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게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더라도 예산도 반영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각 부처하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부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식생활 교육할 때 영양사분들이나 이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말씀하신 내용이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하고 다른 내용들을 죽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정부 측 의견을 참조해 가면서 심사를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된 자료는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정리된 게 있으면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시는 게 효율적인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문위원께서 준비된 자료가 있는 것 같으니까 깔아 주시지요.

○**윤준병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차관님, 지금 개정안 26조의2 거기 정규과정 식생활 교육 이걸 삭제하는 안에 동의하신 겁니까,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저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의 정규과정 속에 포함해서 식생활 교육하는 것이 식생활 교육의 체계나 또 교육 운영과정상의 무게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규과정 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을 내실화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예 빼 버리면 오히려 이게…… 물론 평가는 부분적으로 하겠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는 내용에 배치될 수 있는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걸 빼는 것보다는 예시로 ‘정규 교육과정 등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외연도 넓히면서 정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무게가 있는 교육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걸 빼 버리는 것보다는 뒤에 ‘정규 교육과정 등에’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것이 외연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요청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도 정규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도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해 가지고 가져갔을 때 법사위에서 또 잡혀서 계속 안 나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윤준병 위원** 아니, 이거는 교육부에서 반대하는 게…… 그러면 빼자고 하는 내용에 반대를 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여기 정규 교육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넣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윤준병 위원** 아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정하고 하는 거는 교육부의 영역이고 교육부에서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윤준병 위원** 그러면 지금 26조의2에 해당되는 내용 전체를 빼내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빼내고 저희는 현재 있는 26조에…… 지금 아마 나눠 드렸을 것 같은데요. 1페이지 보면 26조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를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으로 바꾸고 1항은 현행하고 똑같이 하면서 2항에다가 학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넣은 겁니다.

○**윤준병 위원** 아예 26조의2를 없애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없애고 26조 2항에다가 그 내용을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3항도 ‘학교 및 어린이집’, 4항도 ‘학교 및 어린이집’ 이렇게 넓혀 놨고요.

○**윤준병 위원** 원래 정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없고요. 개정안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운영하는 등 모범적으로 실시한 학교를 우수 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견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 법안의 취지는 살리되 교육부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내용으로 26조 2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지금 부처 의견 쪽 보니까 한 가지가 의문이 드는데 지금 26조의3에 대학에서의 식생활 체험,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이 개정안에 담았는데 정부 의견에는 대학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4페이지 보시면 26조의2(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요 국가……

○**임호선 위원**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에 이 경비 지원을 포함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대학을 포함한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묶어서 같이 들어갔고요. 필요한 지원들은 여기에서 포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게 경비 지원 근거를 예를 들어 기재부에, 만약에 국비를 태울 경우에는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도 사회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식생활 교육 활성화 이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 ‘천원의 아침밥’ 이거는 사실은 식생활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쌀 소비 촉진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사회식생활 교육은 필요한 경비들을 저희들이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지는 필요성이나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명시를 안 해도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도 분명히 해 주는 게 안 좋을까요?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만 할 게 아니라 경비 지원 근거를 어떻게 표현해서 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한 경비 지원 등’ 그런 정도 표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면, 크게 어떤 본질적 내용에 대한 차이가 없어 보이고 어디에 어떻게 담을 거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결정해 가겠습니다. 팬참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조(정의)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정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참고로 개정안은 정의 규정에 넣었기 때문에 국민의 책무나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어린이집이 포함되는데요. 정부 의견처럼 되면 국민의 책무나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정부 의견대로, 그러니까 정의 조항에서는 학교에 어린이집을 넣지 않는 걸로 하고 26조에다가 어린이집을 넣어서 지원하는 거는 같이 하도록 그렇게 정부 의견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이병진 의원 개정안대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26조에 집어넣는 걸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간식, 시설·장비 경비 등’ 이것 ‘경비’를 집어넣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정부안에다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잠깐 26조……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정부 의견이 배포가 됐는데요. 문구를 차관님께서는 2페이지 상단의 빨간색을 ‘식생활 교육의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셨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크게 견해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법의 취지와 내용을 어느 조항에 담느냐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의 편은 지금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팬참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우수학교 지정 문제도 26조로 넘기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교육부에서 수용 곤란 의견이 있고, 그게 좀…… 모르겠습니다, 조삼모사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게 봄 주셨으면 좋겠고.

13페이지의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26조의3이지요—이 부분도 정부 측 안을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의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이 부분인데 이것도 영양사협회라든가 영

양교육평가원의 의견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담아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부 측……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정부 측 의견에 개발·보급 콤마 하고 아까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경비의 지원……

○**소위원장 이원택** 경비가 들어가……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리고 체계상으로 26조가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이니까 여기서도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팬찮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다음에 괄호 열고 ‘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더……

○**소위원장 이원택**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26조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이기 때문에 괄호 열고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으로 26조가 바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학교 등에서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5페이지 교육의 달 지정 관련해서는 주간으로 수정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팬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7)

(10시40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2번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내용은 1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비료 원료의 원산지를 비료용기 외부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주로 적용되는—2번입니다—부산물비료의 원료인 수입산 수산물 등의 경우는 사실상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한국비료협회나 관련 조합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관련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거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물비료 같은 경우는 원산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표시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료업계나 유기질비료 쪽에서도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자기들이 적용하기 힘들다 그런 의견입니다. 또 비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산지보다도 성분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저희들이 성분 규격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을 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취지는 방사능이나 이런 게 아마 좀 있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안위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주변방사능 안전관리법 그쪽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어 주셔도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종득 의원의 이 법안 배경이 방사능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한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부산물비료가 어떤지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일본산 수입이 혹시 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산 어떤 수입을 하더라도 그걸 다 전수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 수치가 넘어가면 다 걸리게 돼 있어서 아마 적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우리가 주로 비료를 어느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을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화학비료하고 조금 다른데요. 화학비료에 들어가는 무기질비료는 저희들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요소, 인산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는 거고요.

○**문대림 위원** 러시아, 중국, 중동 이렇게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그래서 일본을, 물론 비료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일본을 염두에 뒀던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비료 수입국이기도 하고 수출국이기도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는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원료를 사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문대림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의미 없어서 폐기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종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원산지를 추적 조사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일본 방사능이라든지 위해성 물질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이걸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뭔가 위해성 검사를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비료관리법 10조에 위해성 비료의 수입제한이라는 조항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 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어서 그런 위해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다 걸러내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수입검사 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주변 방사능 안전관리법에서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라고 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사능 관련해서 원안위에서 신고도 받고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은 저희들이 충실히 지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 충분히 걸러지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현행법에서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그 자료가 농축산부에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거기 자료 아마 5페이지에 보시면 부정·불량비료 적발 건수……

○**임호선 위원** 그런데 부정·불량비료 적발 건수가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거는 아닌데요……

○**임호선 위원**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 자료를 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정리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예, 위원님들께 한번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사실 원산지 표시를,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은 맞는 정책의 방향인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든지 거기에 들어간 구성성분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맞는 정책인 것 같아 보이고.

다만 업계에서 이걸 할 수 없다, 업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책의 방향이거든요. 농식품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오늘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법안은 그냥 이 선에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3번입니다.

개정 내용은 1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 유기식품등의 인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2번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와 관련 연맹이 유기농업은 토양에 기반해야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관련 전문가나 일부 전문가 간 입장 차이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협회나 그쪽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사례로 EU나 일본,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은 토양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적시하고 있고 미국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도 언젠가는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하는 경우에 무농약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유기농업이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토양에서 토양하고 같이 하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또 현재까지 유기라고 한다 그러면 수경재배로 들어가는 그 양액, 그게 그러면 유기자재로, 유기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양액인지 그것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현재적으로는 그 확인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기자재로 만든 양액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요.

외국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수경재배하는 경우에 유기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반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규정상으로 유기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제 인증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좀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혹시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농식품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경재배 농장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고 재배 전 과정에서 저탄소·친환경 가치를 달성하는 그런 기여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농림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만들어서 이것과 별도로 성안해서 좀 가져와 봐 주시기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저희가 저탄소 친환경하고 기후변화대응에서 기후변

화대용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내용을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차관님, 친환경농업 인증받는 데의 기본이 뭐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화학비료하고 화학농약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김선교 위원** 제초제 안 쓰고 화학비료 안 쓰고 비료도 그렇고. 이것도 인증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조건으로 하면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유기 양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기라고 하는 걸 쓰려 그러면 현재의 유기농업의 의미, 개념으로 보면 토양을 기반으로 하는 것만 지금 지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농업을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험재배도 하고 있고 또 시행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이런 거, 특히 상추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수경재배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깊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김선교 위원** 예, 한번 이 법안과 별개로 그런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이제 유기 인증 관련해서, 스마트팜 유기 인증 관련해서 좀 미리 준비는 해 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는 그렇고 아까 유기 양액을 기반으로 해야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

#### 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10시52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4번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개정안 관련 수정의견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택송품을 받은 후 신고하고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 현행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고의의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과실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

의 별금으로 처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3년 3월 LMO 주키니종자 관련 사건에 따른 대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필요 의견인데요.

개정안처럼 고의·과실 구분보다는 국내 반입 목적에 따른 구분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판매용의 경우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판매용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별칙을, 자가소비용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항만·공항 등을 통해서 또는 우편물·탁송품을 통해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식물검역대상물품 검역 위반행위 처벌 현황이 우편물·탁송품 같은 경우에는 7건, 항만·공항 같은 경우에는 87건 정도가 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수정의견에 따라 제시가 됐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에 제2조 과태료 경과조치를 입법기술상 입법례를 고려해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내용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검역대상식물을 검역을 안 받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그게 판매용이냐, 아니면 자가소비용이냐에 따라서 구분해 가지고 별칙을 정하고 있고요. 저번 주키니 사고 났을 때처럼 우편물이나 탁송을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걸 만들어 주신 거니까 타당하고요. 다만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판매용이냐, 자가소비용이냐를 구분해서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별칙을 규정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자가소비용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종자나 식물을 들여와서 바깥에 판 게 아니고 자기가 소비를 하든지 자기가 이렇게 심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자기가 들여와서 심어 가지고 그걸 생육해서 나중에 판매하는 것이 판매용으로 해당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도 판매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자가소비용하고 판매용의 개념에서 자기가 직접 바로 소비는 하지 않지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종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식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포함되니까 판매용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판매용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아니, 내용에는 동의를 하는데 의무 위반 건수를 보면 이게 단속 실적이 무척 적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검역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

어 있는데 검역정책과 여기서 다 직접 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게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우리 검역본부가 공·항만에 나가 있고요,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편이나 택송으로 오는 것들은 우정본부 거기에서 자기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로 오면 저희들이 가서 이거를 검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좀 뭔가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과태료 사안이라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형사처벌 조항을 두게 되기 때문에 단속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법만 개정해 놓고…… 그래서 단속 역량 강화 방안을 같이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벌 건수고요. 단속 건수, 그러니까 검사 건수로 보면 우편물로 온 게 종자만 해도 4t, 그러니까 1만 건, 묘목이 1000건, 1800건, 공유해 가지고 꽤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사고가 나고 나서 우정본부, 관세청, 저희 해 가지고 한번 엑스레이 검사하는 그 기계도 늘리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0)

## 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7)

(10시57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 임종득 의원, 송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임종득 의원님 발의가 많네요.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5번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은 2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 주제로,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축사 내 약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지원을 제6호의2 또는 6호의3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논의필요 의견입니다.

이미 제6호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축사약취로 고통받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소관인 약취방지법 제3조에 약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부나 축산 관련 단체는 별도 의견이 없고요.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항이나 발전소,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인한 것인지, 일반적인 용인 한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사업 내용이 있고요. 이하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페이지의 기금의 용도에 임종득 의원님 안이나 송기현 의원님 안이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이거는 현행 6호에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이 내용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중복의 소지가 있으니까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기금의 용도의 하나가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이것을 축발기금 용도로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것은 축발기금 성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축발기금에서는 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걸로 해 가지고 사실은 축사에서의 악취라든지 이런 것, 배출시설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속이라든지 거기에 장비·기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주민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축발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특회계라든지 지특회계라든지 또는 마을개발사업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되니까 축발기금의 용도로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은 수용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차관님, 축발기금의 용도에 지금 47조 6호에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이 규정에 의해서 실제 축사 등에 배출시설의 악취 저감 장비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공동자원화시설 해 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걸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축사의 배출시설 같은 것들 할 때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하는 것들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5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지금 현재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연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4년 작년에 265억을 지원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어도 사실상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이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김선교 위원님.

다음, 임호선 위원님.

○**김선교 위원** 법안을 발의할 적에는 이게 지역 주민의 의견이 많이 담겨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수용 곤란하다, 이건 일부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발전적인, 법안이 신중히 검토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축발기금 지원을 부처에서 해 주는데 지자체에서는 지방비라든가 이런 게 또 부담이 안 돼 가지고 이런 걸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강제성이 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게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비슷한 사업 지원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환경부는 공동자원화시설이 아니고요, 주로 생활폐기물들 처리하는 사업 중심으로……

○**김선교 위원** 거기는 축산 분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그런데 예산 지원이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체감을, 농림부에서 지원은 해 주되……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체감을 못 느껴, 지금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송기현 의원님이나 임종득 의원이 지역의 현장에 다니면서 느낀 것을 이 법안으로 발의한 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일부 수용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맨날, 법에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냄새 같은 것을 잡지 못 해요.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이 그래서 달라붙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용 곤란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신중히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바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분 의원님을 찾아뵙고 그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김선교 위원** 전국이 거의 마찬가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발기금의 용도로 넣는 것에 저희가 좀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건 농특회계나 지역특별회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나 축산 분뇨와 관련해서 그걸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축산 분뇨와 관련된 자원화도 중요한데 지역 현장에서는 악취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범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려고 그러면 그걸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축발기금 이 내용이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악취 저감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활성될 수 있도록 6호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이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담긴다 하는 취지의 내용을 좀 포섭하더라도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큰 틀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그 내용을 담는다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님, 특히나 축산 분뇨나 악취하고 관련되는 재원의 문제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축발기금보다는 가급적이면 농특회계나 지특회계나 이쪽을 더 쓰고 싶은 게 축발기금이 사실 여유재원이 없다 보니까 축발기금의 용도로 법에다 넣어 놓게 되면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축발기금이니까 축발기금에서 써라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축발기금은 다 농특회계나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써야 되니까 돈을 많이 안 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용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 가지고, 특히 저희도 앞으로 축산업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환경 문제,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확대하기 힘든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지금 지특회계나 농특회계는 이 부분과 관련된 재원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다 받아다가 씁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악취 저감이 농촌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범임에는 틀림없고 이걸 해소시켜 줘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말로만 농촌이 살 만한 동네 이런 내용으로 바꾸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 재원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는 좀 정리를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재원이 문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재원과 관련된 대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축산 악취만 따로 떼 내서 신설할 경우에 실

익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도나 예산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차관님의 입장을 좀 얘기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축산농가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뭔가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분뇨를 처리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뭔가 마을 단위로 공간 계획, 농촌 재생 계획을 만들어서 축사를 밀집단지로 몰아넣고 여기에서 나오는 악취들을 따로 관리를 하는 그렇게 해 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을하고 농촌 단위로 협약을 맺고 거기에서 축사를 어디로 이전시키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집중해서 농특회계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여기에서 축산 악취만 따로 빼서 신설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축산농장의 생산 기반부터 다 같이 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개정 실익이 없다면 이것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악취 민원을 물론 시군에, 저희 지역에도 민원 현장이 몇 곳 있는데 전국적인 악취 민원 접수 현황이 자료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최근에……

○**임호선 위원**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그리고 이게 시군 단위 공모사업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농특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공모사업식으로 지금 축산 악취 개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5쪽에 보시면, 밑의 예산 편성액하고 집행액 보면 21년도에 1103 억에 달하던 예산이 거의 반 토막 난, 이것만 놓고 봐서는 정부의 가축 분뇨 처리 또 그로 인한 축산 악취 개선의 의지가,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축산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자원화시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장비들을 넣고 해서 분뇨를 처리하는데요. 이게 협오시설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자체에서 한다고 했다가 집행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하는 지역들 가 보면 정말 잘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공동자원화시설도 가급적이면 육상에서 하지 말고 지하로 집어넣고 위쪽은 공원화해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이익도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하면서 뽑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개발사업으로 묶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악취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축산환경관리원을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악취

민원이 있는데 가서 악취저감사업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집행을 더 원활하게 하고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 악취 개선에, 의원님들의 이런 법안 발의 취지를 감안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시군 단위 공모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반 토막 난 예산을 어떻게 복원시켜 가지고 이런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봄철은 영농기 시작하기 전에 퇴비 넣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오고요. 그때 뭐냐하면 퇴비를 충분히 부숙시키지 않고 뿐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했고, 그다음에 저기압이 되면 축사 주변에서 냄새가 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업들의 악취 처리하는 기술까지 좀 받아다가, 그전에 SK 라든지 이런 화학회사하고도 MOU를 맺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개선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는데요.

공동자원화시설하고 가축 분뇨 이용 촉진, 여기도 보면 바이오차 얘기가 나오는데 바이오차를 생산하게 되면 국내에서 쓱니까, 아니면 수출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국내에서도 사용이 충분히 많이 될 수 있고요.

○**문대림 위원** 이게 사용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아마 바이오차 생산 자체가 많이 안 돼서 그럴 것 같은데요.

○**문대림 위원**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일부는 토양개량제로도 쓰고요, 그다음에 축사에 깔짚으로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게 수출에도 문제가 있고 국내 활용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바이오차가 들어가네요. 이것도 실용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냥 퇴비라든가 고체연료 쪽으로 가면 되지 굳이 생산해서 오히려 그게 처리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고체연료는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문대림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바이오차, 바이오차 계속하는데 바이오차는 국내외적으로 소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저도 아까 송기현 의원이나 또 임종득 의원이…… 악취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 한 말씀씩 다 하시잖아요. 아마 지역에 가면 겪는 문제고 또 농민들

의 삶의 질도 있고 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 냄새를 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완전히 톤다운되고 주민 갈등의 요소인데……

저는 아까 어느 특정 지역으로 예를 든다면 집단화하면 효율적이겠지요. 처리도 좀 더, 예산도 적게 들고 효율적일 텐데 그 과정이 과연 제대로 될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큼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게 하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건 좀 농식품부가 환경부랑 저는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우리가 처리를 못 하는 정부의 역량인가? 앞으로 10년이면 10년 놓고 이 문제는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농촌에, 예를 든다면 귀농·귀촌하는 사람이든 또는 농촌을 방문했는데 그 길을 통과하면서 오는 어떤 불쾌감이랄까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마음먹으면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하나 아까 어느 한쪽에 집단화하는 방법도 채택을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 21대 때도 얘기를 했고 지금 22대 때 차관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음식물 수거·운반 처리시스템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어느 한 곳에서 공공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수거·운반을 매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원래 자기 집 앞에 쌓아 놓으면 부패 때문에 냄새가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거·운반을 바로 합니다. 처리비를 받고 수거·운반업체를 위탁을 줘서 수거·운반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덜하거든요. 아마 과거에는 골목골목에 음식물이 쌓여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냄새가…… 썩고 그래서 썩었기 때문에 잘 또 수거 안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물 매일같이 수거·운반하거든요. 그렇듯이 축사를 못 옮기는 지역 같은 경우, 어느 한쪽으로 집단 밀집을 못 하는 경우는 사실은 어느 한쪽에 공공처리장을 만들고 그걸 매일같이 수거·운반해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면 아마 지금 악취 문제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개선될 겁니다. 1t에다가 축산농가는 담아 놓으면 그걸 수거·운반하고 수거·운반된 모인 것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농촌의 악취 문제가 상당히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집단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생각만큼 재산권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축사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이 있는데 또 이동해야 할 그 지역의 토지 비용들, 이런 게 안 맞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서 수거·운반해서 공공자원화시설에서 조금 처리하는 방안 그래서 광역시도, 기초지자체가 가축분뇨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공공시설을 하게 하고 그 공공시설은 지하화하고 위에는 공원화하고 이런 건데 이게 속도감 있게 해 주는 두 가지 방식을 잘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한우의 경우에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자기 퇴비장에 퇴비를 모아놨다가 그걸 발효시켜 가지고 인근 논밭에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냄새가 풍기는 건

데……

○소위원장 이원택 더 심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은 수거를 해서 공공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양돈농장처럼 큰 데는 그 농장에다가 바이오가스 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정화해 가지고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설 보완을 해 가지고 거기서 냄새가 안 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 부분도 규모를 어느 기준으로 잡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애매한 기준에 있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가 처리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변하고 분쟁이 아주 많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수거·운반해서 한 곳에서 오히려 정부, 광역시도, 지자체가 좀 투자를 해서 공공처리하는 게 맞고 수거·운반비를 처리비를 농가로부터 받는 게 나을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 방식 모델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 안은……

○김선교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원택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차관님, 좀 광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지가가 하락이 돼요, 그 주변이 다. 그리고 또 인구감소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틀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마지막으로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차관님, 이 내용 포함해서 농식품부가 가축분뇨와 관련된 악취 저감에 대한 종합대책이랄까요, 이게 진홍청도 있고 관계부처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미생물 배분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제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농식품부 차원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오늘 법안 심사하는데 임종득 위원님 법안 발의한 게 다 거부되는 것 같아서…… 사실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하고 악취 저감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악취 저감은 자원화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인데 악취 저감 시설은 자원화 영역에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보는데 아까 축산기금에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다른 회계하고 관계, 또 기재부하고 예산 문제 이런 실익이 없다 이렇게 차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이건 좀 아쉽지만 보류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 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11시21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심사 참고자료 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2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 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물원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동물원 등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응급 시 상시고용 수의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동 법률 및 타 부처 소관 법률 등의 추가적인 개정 없이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래에 보시면 약사법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의료기기법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여야 의료기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은 부칙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도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육안으로 보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것을 판단을 해서 처방전까지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물진료업을 하는, 개설허가를 받아 가지고 동물병원을 만들었으면 그 안에 약사법이나 동물 의료기기 관련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진단할 수 있는 장비도 가지고 약품도 가지고서 자기가 처방한 대로 거기서 처치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동물진료업 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없고 처치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으로 법에 들어가도 달라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되려고 하면 사실은 다른 법률, 약사법이라든지 동물의료기기법이 바뀌어야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으면 그러면 이병진 의원은 아까 타 법 2개까지 개정안을 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법만은 실효가 없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것은 이병진 의원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

##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11시23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14항까지 이상 7건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금주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 아까 수의사법 관련해 가지고 개정취지는 공감하시는 건가요, 실익이 없고를 떠나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수의사 업계에서 조금 반대가 있을 겁니다.

○문금주 위원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수의사 업계에서는 왜 반대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뭔가 차등을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소위원장 이원택 다수 의견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현실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면 수족관이나 동물원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별도로 동물병원업을 따로 자회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설을 해 가지고 실제로는 그래서 처치도 하고 처방도 하고 다 하고는 있습니다, 큰 동물원이나 큰 수족관들은.

○소위원장 이원택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임재금 심사자료 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의 오른쪽을 보시면 박홍근 의원안이 있는데 이것은 한정애 의원안 7번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 그 외에 박홍근 의원안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7번까지 먼저 보고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2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넘어가 주시고요.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고양이의 교배·출산금지 월령 상한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개·고양이의 교배·출산금지 월령 상한을 66개월로 해서 신설하고 위반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의 준수기준을 강화하여 동물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서 생산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동물생산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등을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

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를바 애니멀 호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불확정적인 용어, 즉 ‘기본적인’, ‘소홀’, ‘심각한 포화’ 등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금지 대상인 애니멀 호딩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유자의 부재로 인해 방치된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기·유실동물 등을 발견한 경우에 구조·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구조·보호조치 대상에 소유자의 사망, 입원 등으로 방치된 동물을 추가하고 지자체장이 조치 대상 동물을 인지한 경우에도 조치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유자의 사망 등에 따른 부재로 반려동물이 홀로 방치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주거의 자유 등 소유자의 권리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보호조치의 필요성과 소유자의 권리 제한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구조·보호조치 요건 중에서 소유자의 입원 등과 관련해서는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맹견의 견종 확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행법령상 맹견의 견종은 총 5종이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5종을 새로 추가하여 총 10종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에게 높은 수준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맹견에 포함되는 견종 소유자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것인데 주호영 의원안은 첫째로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를 추가하고 둘째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대규모점포를 추가하되 2번으로 추가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출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춘석 의원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개물림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나, 1번 보시면 체육시설, 대규모점포 등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조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안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는 이미 현행법상 출입금지 장소로 규정

돼 있는 장소가 포함돼 있으므로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을 조문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입니다.

31페이지,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의 실태조사 및 공표 사항에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몰림 사고 현황 및 그 견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몰림 안전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하십시오.

○전문위원 임재금 개정안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에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생산업자를 추가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을 신고하지 않은자가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을 신설하는 것이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최근 일부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생산업자가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여 보호 명목으로 동물을 유상으로 인수한 후 해당 동물을 다시 유상으로 분양하는 행태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첫째로 결격사유 확대 규정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자유의 제한에 해당돼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사한 명칭 등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 보호동물이 20마리 이하인 소규모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관련 보호시설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시설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것이므로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위반 시 과태료는 유사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시행일은 주호영·이춘석·한정애 의원안이 6개월이고 박홍근 의원안은 1년인데 이 사항들만 수용하신다면 6개월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전반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비슷하고요. 중간중간에 혹시 달라지는 것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는 지금 영업자 준수사항에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이것을 상한을 66개월로 두는 조항을 추가로 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통 현실을 보니까 출산하는 것들이 10년 내지 15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66개월로 하게 되면 기준에 있던 사람들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의 애니멀 호딩 관련해 가지고는 6페이지에 보시면 조문에 4호를 신설하셔 가지고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을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렇게 신설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현행 2호에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이런 것들이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4호를 안 해 주셔도 2호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의 34조(동물의 구조·보호)의 경우에 지금 발견했을 때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것을 보호 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발견 또는 인지했을 경우 까지도 확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인지를 했는데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호 조치할 수가 없는데 처리를 하라고 하게 되니까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4호에 ‘소유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 이 경우에도 구조·보호 조치로 해 주셨는데 현재 이렇게 소유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의 경우에는 현행에 있는 1호의 유실·유기동물이거나 2호에 있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이겼에 해당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4호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맹견의 종류 여러 가지를 죽 리스트 해 가지고 법에 그냥 명시하는 식으로 해 주셨는데요. 현행 법률을 보시면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그리고 3개는 예시를 해 놨고 나머지는 따로 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놓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다 거기까지 써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현행대로 둬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지금 저희가 5종과 그 잡종, 그러니까 도사견·핏불 테리어·로트와일러·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5종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게 호주의 경우에는 2종, 독일의 경우에는 3종, 미국의 경우가 5종, 프랑스가 4종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반려동물 단체에서 단순히 맹견이 아니고, 이게 다 크다고 해서 전부 맹견이 아닌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강요하느냐 이런 불만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둬 주셔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필요하면, 현재도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그 개는 기질 평가를 해 가지고 추가로 맹견으로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의 맹견의 출입금지 조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에 보시면 현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학교로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까지 더 넣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도 자구 정리하는 것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의료기관 그다음에 약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대규모점포는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게 불특정 다수

인이 이용하는 장소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호영 의원님 안에 단서로 달아 주신 게 일시적으로 출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 출입할 수 있다, 그것 좀 풀어 주신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저희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 그게 조금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부령을 아예 없애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맹견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약국에 들어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맹견을 맡길 수 없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법에 의해서 못 들어가게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 봐야 되는데 이 단서를 아예 없애는 게 좋은 건지, 현행대로 그대로, 아니면 단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되 뭔가 조금 더 구체화해 가지고,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단서를 ‘다만 일시적으로 출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장소 관리자에게 통지한 후 일시적으로 출입 할 수 있다’ 그렇게 단서에서 풀어 줄 건지, 그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개물림 사고 관련해서 주요 사항 공표 내용은 주호영 의원님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37페이지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박홍근 의원님께서 동물생산업자·동물판매업자가 보호시설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는지는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판매업자니까 또는 생산업자니까 보호시설을 못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판매업자나 생산업자도 판매장하고 생산장하고 보호시설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도록만, 명확하게 우리가 단속을 한다면 할 수도 있게 터 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지금 현행 규정에 생산업이나 판매업을 하게 되면 별도로 구분해서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단속도 하게 돼 있고 또 보호시설도 거기에 수용된 동물들의 이력을 관리하도록 돼 있고 시설 관리도 하게 돼 있으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보호시설이라고 해 놓고 사실은 판매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 조항에다 아예 못하게 막는 것보다는 지금 의원님께서 내 주신 대로 78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명칭을 사용해서 하지 않을 것, 금지사항을 넣고 거기에 맞게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78조, 101조의 그 개정 의견은 일부 수용해서 한 전문위원 의견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앞에 있는 37조의 원천적으로 막게 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도 있고 또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겠습니까.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먼저 11쪽, ‘인지한’이라고 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

의하고요. 대신에 ‘소유자의 사망, 입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좀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 동의하고,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이 유실·유기동물 또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포함된다,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쪽, ‘일시적으로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등등 돼 있는데 저는 아까 차관께서 2안으로 제시한 안 있잖아요, 그 안이 적정하지 않나.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가피한 사유를 특정화해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출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는 내용이 보다 낫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5쪽의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하고, 이 부분을 이 규정대로 하면 권리 제한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장의 내용은 동물판매업자가 판매업하면서 동물보호시설에 있는 동물을 갖다 판매를 해 버린다든지, 우리가 사실은 지극히 억제해야 될 방향, 규제해야 될 내용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을 거예요.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 준수사항에 일부 넣어 가지고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로 보면 이게 꽤 문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동물판매업자나 동물생산업자가 굳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로…… 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는 관에서 또는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면 민간을 통해서 주되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시설인데 그 시설 운영자를 영업행위를 하는 주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실제 준수사항 내용 가지고 규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안된 내용을 수용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떤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먼저 11페이지의 4호 ‘소유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 이것은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위원님은 그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윤준병 위원** 그래서 지금 입원 같은 경우 그냥 하루 이를 입원하는 경우는 관리가 되는데 좀 오랫동안 입원해서 사실상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이런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입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하지 마시고 시간을 더 주시면 다음번에 제가 문구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방치된 동물이 아니고 뭔가 제한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23페이지의 그것은 아까 제가 단서를 붙이되 타인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장소 관리자에게 통지한 후 출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 법 44조에 보면 장기입원이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있구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있기는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 있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있으면 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그다음에 문금주 위원님.

○임호선 위원 5쪽, 애니멀 호딩 행위 금지를 봐 주시면 이게 개정안 10조 4항에 4호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앞서 검토의견에서 차관님께서 이게 1호 내지 2호에 포섭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이 유발될 경우에 2호. 이게 또 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행위 자체가.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개정 필요성이 낮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별도로 규정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지금 4호 개정안을 보시면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2호에 있는 대로 먹이 제공도 제대로 안되고 위생·건강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사육·관리, 보호의무가 제대로 안 돼서 상해나 질병이 났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4호를 현재대로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게 너무 모호해서 학대행위다라고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해야 지역에서 집행을 할 때 구체화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임호선 위원 아무튼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참고로 시행규칙 별표 2에 세부적으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 드리십시오,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제가 담당 국장인데 좀 부언을 드리면, 이 조항 자체의 2호가 애니멀 호더를 막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 조항도 이것 관련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은 보완하려면 그때 이미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조항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러면 이것도 좀 보완해서……

○임호선 위원 2호를 보완한다면 상해나 질병이 유발되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상태에 관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넣었는데요, 이것을 좀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2호의 그것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또는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런 정도로 바꿔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임호선 위원** 예,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이것도 다음번에 제가 한 번 더 문구 보고 조정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문금주 위원님 다음에 김선교 위원님입니다.

○**문금주 위원** 전반적으로 차관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1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여객기 참사 때도 당장 이런 사례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보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금주 위원**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서 1인가구,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구 다시 봐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수정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21페이지,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확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법안을 제출하신 두 의원님께서 다수인의 집합 장소에 맹견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부 수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체육시설하고 대규모점포도 저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체육시설 같은 데 맹견이 가 있으면 아무래도 근접하기에 되게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너무 제한하게 되면 그런 거였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 번 더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조례 제정 현황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조례 제정 현황이 있습니까, 맹견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5개 시도가.....

○**김선교 위원** 전체가 안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전체로는 안 돼 있고요, 광역시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다른 게 없으면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해 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페이지에 보시면 동물생산업자의 개·고양이 교배·출산금지 월령 상한 신설과 관련해서 위반 시 벌금은 그대로 하지만 66개월 이상 상한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게 한 5년 4개월 정도 되는가요? 5년 6개월 정도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66개월이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보통 7년 정도 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한 10년에서 15년……

○**소위원장 이원택** 10년에서 15년, 많이 제한하긴 하네요.

일단 이 부분 이렇게 상한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모아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애니멀 호딩 행위 금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현행 2호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정부 측 의견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아니, 2호……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은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요. 다음번에 혹시 저희가 문구를 좀 검토해 가지고 임호선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차라리 이 2호를 개정하는 방안을 위원님이 발의해 주시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넘어가더라도요.

○**임호선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논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수정해서 의견을 주시면 다시 별도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어차피 문안을 조정하는 거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2호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상해나 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검토를 조금 한 번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이요.

○**윤준병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잠정적으로 얘기하고 추가 의견이 있으면 다음에 할 때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전문위원 얘기는, 아까 2호는 위반 시 벌칙이 징역 2년에 2000만 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지는 것이어서 그 2호를 개정하는 방식은 조금 과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용을 보고 위원님이 다시 추가로 발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것 결론을 이렇게 매듭짓겠습니다.

일단 이 조항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법안 심사 때 정부 측에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면 그때 보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문대림 위원** 3호로 처벌받은 사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3호로요?

○**문대림 위원** 예, 현재까지 단 한 건이라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호의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현재까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현재까지 없지요? 단 한 건도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9페이지의 소유자의 부재로 방치된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4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발견 또는 인지’는 그냥 ‘발견 한’으로 현행대로 가지고 호 하나를 만들어서 4호에 ‘소유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위원님께 다시 상의드리고 나중에 한번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이나 원칙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력이랄까 또 현실 가능한 범위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도 다음 법안소위 때 한번 정부 측 의견도 정리해 보시고 위원님들도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처럼 같이 동반해서 다음 법안소위 때 심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맹견의 견종 확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관련해서 8호에 가면 현행은 대체적으로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학교, 사회복지시설—포괄적으로—그다음에 의료기관, 약국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은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대규모점포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 이것은 법으로 명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점포는 공간이 이렇게 확대된 공간이 아니고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사건·사고가 나온다면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은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행 규정으로도 맹견을 데리고 다니면 입마개도 해야 되고 목줄도 짧게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위험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게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린애들 있는 데는 조금 힘드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건 의견 수렴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다가. 대규모점포나, 이건 조례로도 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어떻든 이 법안은 제가 볼 때 오늘 결정 못 합니다. 아까 다음 법안심사 때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오늘 결정을 못 하니까 이것도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자체에다 한번 의견 수렴을 해 보고요.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그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본문 단서규정 그건 아까 얘기한 그 내용으로 정리하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31페이지에 특별한 의견 없으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원안 동의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하고.

35페이지 이 부분은 보호시설하고 판매장하고 겸업을 금지시키는 건 좀 과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고. 그러나 오인하게 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것은 제한을 하고 처벌조항을 넣고. 그러나 겸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겸업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이미 인허가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행정력이 못 미쳐서 단속을 못 해서 그런 거지 사실 민간 보호소 개가 판매소로 거쳐서 가는 부분을 저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다 적발할 수는 있습니다. 법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하는 게 무리 없이 하는 것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운영하는 곳에서 혹시 헌법재판이나 이런 쪽을 건들게 되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서요. 그건 한번 운영하는 것 보고 정 안 되면 그 뒤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준병 위원** 지역에서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행정력으로 한다고 하는데 행정력이라고 해서 매번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일탈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겸업을 하지 않도록 미연에 막아놔야 그런 일탈행위에 대한…… 어차피 행정력도 제대로 뒷받침도 안 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오늘 의결 안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요. 이건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변호사들하고도 헌법 위반이나 이런 소지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단속을 할 때 문제가 뭐가 있는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겸업을 해 놓게 되면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단속이 다 안 되게 돼서 그걸 아예 금지를 시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쪽을 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자체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법무부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무튼 겸업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걱정과 우려 또는 이런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나 또 아까 직업의 자유 부분이 있는데 그것 한번 잘 따져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볼 때는 실효성 있는 건 보호시설을 허가를 안 내 주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또 차명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건 그다음 문제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이 부분은 아까 쟁점 법안들하고 다 연동돼 있으니까 오늘 심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는 여기까지만 하는 것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일부 법안은 오늘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주호영 의원님의 아까 그 맹견들을 가를 수 없는 공간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건 광역시도 의견도 듣고 또 전체 같은 법안이니까 다음 법안심사 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의견 받는 데 한 달이면 됩니까, 2주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한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한 달?

그려면 다음다음 법안심사 때 정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직원,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 ○**출석 위원(11인)**

김상욱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윤준병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임재금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정책기획관 김정주  
국제협력관 정혜련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농식품혁신정책관 김정욱  
축산정책관 안용덕  
유통소비정책관 박순연